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2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양경숙·김영호·이용우

김진표・강병원・노웅래

이광재 • 고용진 • 김영진

기동민 · 장철민 · 임오경

김정호 · 김수흥 · 김영주

유영석 · 김경협 · 우원식

조명희 · 송석준 의위

(20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함)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8. 4. 26.)을 하면서 2019. 12. 31. 까지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같은 법 제6조의 등록규정 등이 실효되어 국세행정 혼란과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따라서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

용하는 것으로 함.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세무사법」에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더욱이 국세청 등의 세무행정 업무에 수십년 종사하여 세무회계 전문성과 세무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온 국세경력으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국세경력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하여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과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전

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 경과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함.

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안 제6조제5항)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 라.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등 금지(안 제11조의2 및 제22조의2)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12조의 3 및 제22조의 2).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안 제14조제1항)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사.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안 제14조의3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

- 아.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 중 "경리병과(經理兵科)"를 "재정병과(財政兵科)"로, "경리 업무"를 "재정 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세무사는 그등록사항이"를 "세무사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로 한다.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등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 세무법인 등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그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

-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1월"을 "7월"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4조의2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

하는 경우

-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의"를 "재무상태표의"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중 "대차대조표의"를 "재무상태표의"로 한다.

제16조의13제3항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16조의1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의 장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 여야 한다.
-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무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 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9조의15 중 "제6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제16조의15제2항"을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 록부

-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실무교육에 관한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아니한 경우"로 본다.

제22조의2제1호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12조의3"을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 3.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 4.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 5.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 6.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및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제24조 본문 중 "제22조의2제1호·제2호"를 "제22조의2제2호·제7호" 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몰수·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 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제3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 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 록한"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1. ~ 3. (생 략)
- 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ㅣ 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 이 있는 사람
- ② ~ ④ (생 략)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 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 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 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 | 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 정 아

1. ~ 3. (현행과 같음)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 | 4. ------재정병과(財政 兵科)--------재정 업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 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 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 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 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 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 다.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생 략)

<신 설>

<신 설>

(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 ② ~ ④ (현행과 같음)
- (5) -----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 시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 는 등 등록사항이-----
 - 제11조의2(세무대리업무의 소개· 알선 등 금지) 누구든지 세무 사, 세무법인 등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 또 는 유인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 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 관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 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 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 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 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 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 략)

<u><신</u>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4 조의2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 승진임용 전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 직에 있 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

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 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에서 처 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 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세 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 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 사가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 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 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생략)
 -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 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 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 다.
 - ③ ④ (생 략)
-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7 제한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u>대차대조표의</u>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 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을 말한다.
- 제16조의13(해산) ①·② (생략)

	<u>경우</u>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	위
	및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	무
	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	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	<u>0</u>
	로 정한다.		
세	16조의6(자본금 등) ① (현	행	과
	같음)		
	2		
	<u>재무상태표의</u>		
	<u>.</u>		
	③・④ (현행과 같음)		
세	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	자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2		
	<u>재무상태표의</u>		

제16조의13(해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 ② 제 (생 략)

<신 설>

<신 설>

③
<u>재무상태표상</u>
<u>의</u>
④ (현행과 같음)
]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
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과 한
국세무사회의 장 및 국세청장
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
국세무사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
네 호페이지에 3개원 이사 게

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신 설>

제17조(징계) ① ~ ⑥ (생 략)

⑦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 무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징계)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 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 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 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무사에 대한 징계내용 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 제19조의15(준용규정) -----

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 사무소에 관하여는 <u>제6조제2</u> 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 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 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 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 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 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 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 3, <u>제16조의15제2항</u>, 제17조, 제 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u>제6조</u> 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 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 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 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③ (생략)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
 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

 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_
제6조제)	2
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T	
은 조 제4항	_
	_
	_
	_
	_
	_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 <i>n</i>	L
	<u>「</u>
<u> </u>	-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u>제6조</u>	<u>`</u>
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이	}
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_
	_
	_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ㅎ	- H
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	
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히	<u> </u>

-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의 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 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 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 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 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 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세 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 항"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 여야 한다.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 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 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 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 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 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 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 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 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 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 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 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 2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 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 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 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

- 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실무교육에 관한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 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 6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 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신 설>

<신 설>

<신 설>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
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
우"으로 본다.
- 세22조의2(벌칙)
· · · · · · · · · · · · · · · · · · ·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세무
대리업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u>2.</u> 제12조의3제1항
3.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
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4.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
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
선한 자

5.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수임

2. ~ 5. (생략)

<신 설>

한 자 6.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및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7. ~ 10.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제 2호·제7호----제25조(몰수·추징) 제12조의3(제1 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 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

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
<u>다.</u>